

회 신

귀문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항 제7호와 제120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현물출자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내국법인이 외국법인과 공동으로 출자하여 신설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당해 내국법인과 공동으로 출자한 외국법인이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다면 추후 신설법인의 설립으로 인하여 특수관계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하는 것이 타당함. (세정 13407-942, 2000. 7. 27)

## 10. 부가가치세 중 면세주택에 해당하는 매입세액 불공제분 등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 여부

### 【질 의】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건축업, 건축, 토목 등 도급공사 및 자체 토지를 구입하여 건축물을 분양하는 직영사업 등을 주업으로 하는 종합건설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지방세 담당자로서 아래와 같이 당사 업무를 진행해오면서 해석상 어려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 또는 제외 여부의 지방세법 제111조 과세표준 및 동 법 기본통칙 111-1 과세표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문이 있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1> 부가가치세 중 면세주택에 해당하는 매입세액 불공제분이 건축비 원시취득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의 여부 A 건설현장에 면세주택이 70%, 일반주택(85㎡ 초과)이 30%의 비율로 하는 공사현장의 재료비 등 물품의 공급가액 100억원에 100억원은 당연히 건축비 취득비용이지만, 부가가치세 합계액이 10억이 발생하였을 경우, 부가가치세 관련조항(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 의거 매출액 비율로 안분하여 일반주택에 해당하는 30%의 3억은 선급부가가치세로 처리하였다가 환급을 받지만, 국민주택에 해당하는 70%의 7억에 대해서는 환급을 받지 못하고, 원가계정(잡비) 또는 관관비 및 영업외비용 계정으로 처리하는 경우에